

국무조정실 ·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

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-11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4일

국무조정실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☐ 인턴A(행정)

서류전형 합격자 명단			※ 성명(생월일)
이○규(0409)	배○수(0903)	김○찬(0112)	양○은(0909)
김○란(0105)	윤○지(0216)	홍○진(0306)	공○원(0626)
채○영(1221)	황○연(1023)	황○진(0222)	김○지(0314)
김○경(1023)	유○영(1024)	윤○빈(1209)	김○진(0627)
엄○혜(1119)	곽○윤(1217)	강○유(0725)	차○현(0429)
방○영(1215)	최○현(0602)	박○현(0825)	

☐ 인턴B(외국어·국제)

서류전형 합격자 명단			※ 성명(생월일)
권○은(0310)	김○수(0223)	이○지(0901)	전○빛(1003)
강○준(0427)	조○연(0502)	황○빈(0220)	김○희(1129)
남○진(0403)	박○원(0224)	전○경(0623)	임○우(0629)

☐ 인턴C(홍보)

서류전형 합격자 명단			※ 성명(생월일)
정○라(0909)	장○은(1217)	이○은(0420)	노○형(0328)
최○주(0729)	현○원(0423)	권○찬(0322)	조○호(0427)

2. 면접전형 일정

- (일시) '24.2.20.(화) 10:00 부터
 - 개인별 면접시험 시작 시간은 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
- (장소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, 정부세종청사 1동(국무조정실)
 - * 출입증을 교환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인솔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,
면접시작 20분 전까지 1동 1-2 출입구 안내데스크로 오시기 바랍니다.

3.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안내

-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지 1·2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여,
2월 16일(금)까지 e-mail로 제출바랍니다.
 - e-mail: opminsa@korea.kr

4. 유의사항

- 면접 대상자는 면접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지각 또는 불참의 경우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 - * 문의 : 국무조정실 인사과(044-200-2791)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 (서명)

국무조정실장 귀하

<별지 2호>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